

제28.24호

행정명령

뉴욕주 비상 사태 선포

공중보건서비스법(Public Health Services Act) 362조 및 365조(42 U.S.C §§ 362 및 365, 2021년 8월 2일 미 질병통제센터(United States Center for Disease Control, CDC) 국장령에 따른 42 C.F.R. § 71.40 시행규정에 따라 격리가 필요하며 전염가능한 질병이 존재하는 곳에서 온 사람에 대한 공중 보건 평가 및 권리 중단 명령("42장 명령")이 발령되었기 때문에,

42장 명령은 (그들의 출신국과 상관없이)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여행하는 "보호 대상이 되는 비시민"이 미국 육지와 인접한 해안 국경에서 또는 그 근처의 입국 항구 또는 미국 국경 순찰소에 모이는 곳으로 입국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2023년 5월 11일 타이틀 42 명령이 만료된 이후 수천 명이 추가로 뉴욕에서 피난처를 찾았고, 현재 뉴욕시에서만 40,000명 이상의 이민자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뉴욕주 및 기타 뉴욕주 내 지방 정부로서 이민자 수천 명의 주거와 기타 기본적인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인도적 요구를 지원할 인프라, 시설, 자원이 부족한 경우 연방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뉴욕시와 주에 피난처를 찾는 상당히 많은 이민자가 대규모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악화되고 지방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재난 비상 상황이 발생하여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생겨 인명이나 재산이 손실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 뉴욕주 주지사 KATHY HOCHUL은 뉴욕주 헌법과 행정법 제28조 2-B항에 의해 저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행정명령 28호에 명시되고 행정명령 28.23호에 계속된 주 재난 비상사태를 연장하고, 행정명령 28에 포함되고 행정명령 28.22에 계속된 조건 및 정지를 2025년 3월 16일까지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올버니 시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 및 주 인장의

권한에 의해 이를 발표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